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28 발의연월일: 2020. 9. 9.

발 의 자:민형배・이용빈・윤영덕

소병훈 · 이형석 · 이정문

김두관 · 김철민 · 박홍근

조오섭 · 이병훈 · 이수진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는 사망자, 행방불명자 및 상이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 판결 받은 사람,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 강제징집된 사람, 외상후 스트레 스 장애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수배·연행 또는 구금되거나, 공소 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을 관련 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받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 피해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 관련자의 범위를 추가하여 보상금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타 1급·2급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5·18민 주화운동의 희생과 공헌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 가. 5·18민주화운동 대상자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질병 및 장애를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성폭력 피해자, 강제징집 피해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안제1조 및 제2조).
- 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정신장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도 보 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조·제6 조).
- 다.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2호 다목 신설).
- 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기타지원금을 추가함(안 제8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과"를 "5·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유족의 범위 등)"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한다.

- ① 이 법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 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1. 5. 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 2. 5. 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 3.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4.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 5.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 6.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 7.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강제징집 피해를 입은 사람
- 8.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피해자 와 이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

제4조제2항제2호 중 "관련 상이자의"를 "관련 상이자의 신체 또는 정신"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입은"을 "입거나 정신질환이 발생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입은 사람이 신체에"를 "입거나 정신질환이 발생한 사람이 신체 또는 정신에"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은"을 "입거나 정신질환이 발생한"으로, "상이 외"를 "상이 또는 정신질환 외"로 한다.

다. 기타 1·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나목의 보상금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조제1항 중 "입은"을 "입거나 정신질환이 발생한"으로, "상이로 인하여"를 "상이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기타지원금"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월	제1조(목적)
18일을 전후한 <u>5·18민주화운동</u>	<u>5·18민주화운동</u>
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	의 관련자와
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u>입은 사람과</u>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	
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	
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	<u>.</u>
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족의 범위 등) <신	제2조 <u>(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u>
<u>설></u>	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u>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다음</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
	회에서 심사·결정된 사람을 말
	<u>한다.</u>
	1. 5. 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2. 5. 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 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 이를 입은 사람(이하 "관련자" 라 한다)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 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 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

3.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
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4.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5.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u>사람</u>
6.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7.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강제징집 피해를 입은 사람
8.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
한 치유가 필요하다고 인정
된 피해자와 이의 후유증으
로 사망한 사람
<u>②</u> <u>5</u> ·
18민주화운동 관련자

- 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 제4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심의위원회) ① (생 략)
 -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u>관련 상이자의</u> 장해등급 판 정
 - 3. ~ 5. (생략)
 - ③ ~ ⑤ (생 략)
- 제5조(보상금)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 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 한다.
 - 1. (생략)
 -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u>입은</u> 사람 또는 그 유족: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생략)

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체 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신 설>

②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②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생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 질 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 -- 을 지급한다.

-
가. (현행과 같음)
나 <u>입거나 정신질환</u>
이 발생한 사람이 신체 또
<u>는 정신에</u>
_
다. 기타 1·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에는 나목의 보상금 수준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u>입거나 정신질환이 발</u>
<u>생한상이 또는 정신</u>
<u> 질환 외</u>

③ ~ ⑤ (생 략)

제6조(의료지원금) ①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u>입은</u>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u>상이로 인하여</u>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개호(介護) 또 는 보장구(補裝具)의 사용이 필 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개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생략)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한다.

②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의료지원금) ①
<u>입거</u>
나 정신질환이 발생한
<u>상이</u>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u>보상금·의료지원금·</u>
생활지원금·기타지원금